

예비심사 안건

의안번호	제2013 - 호
의결 연월일	2013. . . (제 회)

의 결
사 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안

제 안 자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제출년월일	2013. 9. .

목 차

I.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 제도(개정안) 개요	2
II. 규제심사안	4
1. 중소기업자단체 사업조정 신청서류 제출	4
2. 과태료 부과	8

I. 규제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중소기업자단체 사업조정신청 서류 제출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비서류 :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단체정관 및 구성원 명부, 단체 이사회 의결서 등* (법개정 내용) 적합업종의 합의도 출이 되지 않는 등의 경우 중소기업자단체도 동반위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13.8.6공포)
2. 과태료 부과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관련 대기업 등에 사업인수·개시·확장에 대해 일시정지 이행 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법개정 내용) ① 중기청장은 일시정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에 그 일시정지 이행을 명할 수 있음② 중기청장은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3.8.6 공포)

□ 제도(개정안) 개요

① 중소기업자단체 사업조정 신청서류 제출

(도입배경)

-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이 되지 않는 등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 중소기업자단체도 동반위를 거쳐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상생법 개정사항을 반영

* 삼생법 제32조제5항(‘13.8.6 공포’)

-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의 적격여부 및 합의내용 이행 확인을 위해 제출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추진방안)

중소기업자단체가 위원회를 거쳐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함

(주요내용)

- 중소기업자단체가 위원회를 거쳐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이사회의 의결서
- 적합업종 합의내용 이행 여부 등 사실조사 확인서

② 과태료 부과

(도입배경)

-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 등에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일시정지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고 대상 등을 공표하는데 그쳤으나,
- 공표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기업등에 이행명령을 취하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5천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
* 삼생법 제34조제3항 및 제43조 제3항('13.8.6 공포')
- 대기업 등에게 일시정지 이행을 강제하여 중소상인들과의 자율 협의를 촉진하는 등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추진방안)

-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함

(주요내용)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u>	<u>법 제43조 제2항</u>	<u>5,000만원 이하</u>

II. 규제심사안

1. 중소기업자단체 사업조정 신청서류 제출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 등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사유)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의 적격여부 및 합의내용 이행 확인을 위해 제출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조문 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신설>	<p><u>제23조의2(적합업종의 사업조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사업조정신청 자유서</u> <u>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u> <u>3.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이사회 의결서</u> <u>4. 적합업종 합의내용 이행 여부 등 사실조사 확인서</u>

②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등록번호	미등록		구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심		존속기한연장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단위	○								

						사													
	중소기업자단체 사업조정 신청서류 제출	경계 적 규제	○	사회적 규제			행정 적 규제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국장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인섭(042-481-4408) 																		
3. 근거법령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4.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의견수렴 방식</th> <th>의견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 중소기업자단체</td> <td>입법예고 (9.30~11.11)</td> <td>없음</td> </tr> <tr> <td>이해관계자 동반성장위원회</td> <td>입법예고 (9.30~11.11)</td> <td>없음</td> </tr> <tr> <td>관련 부처 해당없음</td> <td>해당없음</td> <td>없음</td> </tr> </tbody> </table>							유형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중소기업자단체	입법예고 (9.30~11.11)	없음	이해관계자 동반성장위원회	입법예고 (9.30~11.11)	없음	관련 부처 해당없음	해당없음	없음
유형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중소기업자단체	입법예고 (9.30~11.11)	없음																	
이해관계자 동반성장위원회	입법예고 (9.30~11.11)	없음																	
관련 부처 해당없음	해당없음	없음																	
5. 규제존속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사업조정 신청서류의 제출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관련 법률이 한시법이 아니므로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 규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신청을 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이사회의 의결서 적합업종 합의내용 이행 여부 등 사실조사 확인서 																		
7. 규제체계도	<table border="1"> <tr> <td>사업조정 신청</td> <td>→</td> <td>신청내용 심의·의결</td> </tr> <tr> <td>중소기업자단체 → 동반성장 위원회</td> <td></td> <td>동반성장위원회 → 중소기업청</td> </tr> </table>				사업조정 신청	→	신청내용 심의·의결	중소기업자단체 → 동반성장 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 중소기업청									
사업조정 신청	→	신청내용 심의·의결																	
중소기업자단체 → 동반성장 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 중소기업청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 정의

- 위원회가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이 되지 않는 등의 경우 중소기업 청장에게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 중소기업자단체도 동반위를 거쳐 사업조정신청을 할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 삼생법 제32조제5항('13.8.6 공포)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의 적격여부 및 합의내용 이행 확인 등
 - 신청요건을 명확히 검토하기 위하여 제출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해외 사례) 없음

(2)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 대안 검토

-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신청을 하는경우 신청인, 피신청인의 적격여부 및 합의내용 이행 확인 등
 - 신청요건 검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요건에 해당(규제 대안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

- (비용)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시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편익)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적격여부 판단은 신청서류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과도한 규제비용 유발 여부)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시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집행가능 또는 필요한 규제방식 여부)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시 단체의 규모에 따라 서류의 제출범위 등을 차등 적용할 사안이 아니며, 신청요건 검토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만을 정하고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 신청시 신청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신청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

(3-2) 이해관계자 협의

-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9. ~9.) 결과 의견이 없었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 사업조정 신청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조정 신청자에 대한 행정편의 제공 등 사업조정 업무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2. 과태료 부과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대기업 등의 사업인수·개시·확장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 후에도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 일시정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사유) 대기업 등의 사업인수·개시·확장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 후에도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 공표에 그쳤으며, 공표후에도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 행정조치할 방법이 없었음

<조문 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p>[별표 2]</p> <p><u>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u></p> <p>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생략)</p> <p>2. 개별기준</p> <table border="1"><thead><tr><th>위반행위</th><th>근거 법조문</th><th>과태료 금액</th></tr></thead><tbody><tr><td>가.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td><td>법 제43조제1항제1호</td><td>100만</td></tr><tr><td>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경우</td><td>법 제43조제1항제2호</td><td>500만</td></tr><tr><td>다.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td><td>법 제43조제1항제3호</td><td>300만</td></tr></tbody></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100만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500만	다.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법 제43조제1항제3호	300만	<p>[별표 2]</p> <p><u>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u></p> <p>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p> <p>2. 개별기준</p> <table border="1"><thead><tr><th>위반행위</th><th>근거 법조문</th><th>과태료 금액</th></tr></thead><tbody><tr><td>가.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나.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r><td>다.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tbody></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100만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500만																							
다.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법 제43조제1항제3호	300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전			개정후		
또는 기회한 경우					
<신설>			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3조 제2항	5,000만원 이하

[2] 규제 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등록단위	미등록	구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심사	존속기한연장	
			○							
		사업조정권고 이행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국장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인섭(042-481-4408) 									
3. 근거법령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대기업 등		입법예고 (9.30~11.11)			없음			
	이해관계자	대기업 등		입법예고 (9.30~11.11)			없음			
5. 규제존속기한	관련 부처	해당없음		해당없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사업조정 권고 이행명령을 위반한 대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존속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 규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 등에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일시정지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고 대상등을 공표하는데 그쳤으나, - 공표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기업등에 이행명령을 취하고, <u>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5천만원 이하)</u>를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 					
7. 규제체계도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일시정지 권고 이행명령</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 width: 20px;"></td> <td style="padding: 5px;">일시정지 권고 이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td> </tr> <tr> <td style="padding: 5px;">중소기업청 → 대기업 등</td> <td style="padding: 5px;">중소기업청 → 대기업 등</td> </tr> </table>	일시정지 권고 이행명령		일시정지 권고 이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중소기업청 → 대기업 등	중소기업청 → 대기업 등
일시정지 권고 이행명령		일시정지 권고 이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중소기업청 → 대기업 등		중소기업청 → 대기업 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 정의

- 대기업 등의 사업인수·개시·확장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 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일시정지 이행을 강제하여 중소상인들과의 자율협의를 촉진하는 등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조치 제도가 부재

※ 개정 상생법 제43조 제2항 내지 제3항('13.8.6 공포)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부 개입의 필요성

- 대기업 등의 사업인수·개시·확장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 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공표에 그쳤으며, 공표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할 방법이 없었으나

- 대기업 등에게 일시정지 이행을 강제하여 중소상인들과의 자율협의를 촉진하는 등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해외 사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대기업 등에게 일시정지 이행을 강제하여 중소상인들과의 자율협의를 촉진하는 등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행강제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최소한의 요건에 해당(규제대안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 대기업 등에게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실행하는 행정조치 사항으로 추가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편익) 대기업 등의 사업인수·개시·확장에 대해 일시정지 이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제도를 통해 사업조정업무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과도한 규제비용 유발 여부) 대기업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집행가능 또는 필요한 규제방식 여부) 대기업에게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이행령 제고를 위해 집행시기 등 차별적 집행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에게는 규제가 발생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과태료부과는 중소상인들과의 자율협의를 촉진하는 등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것으로 적정

(3-2) 이해관계자 협의

-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9.30~11.8) 결과 의견이 없었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 일시정지 이행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조정 업무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10명 이내의 위원”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심의회의 위원”을 “조정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업이나 기업 관련 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④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및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심의안건을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분야별 조정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심의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⑤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3. 위촉직 위원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등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한 7명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제7항(종전 제4항) 중 “제2항3호”는 “제3항 각 호”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 중에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기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

③ 위원장과 제2항제1호·제2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2조제1항 중 “조정심의회”를 “조정심의회(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조정심의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2. 특정 위원의 발언내역
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사업조정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인 법인의 임원인 때
 2. 심의회 조정사항에 대하여 사업조정의 당사자의 대리인(법정대리인 포함), 보증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일 때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당해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중소기업에 한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사업조정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게 사업조정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32조제5항”으로,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32조제6항에서”를 “법 제32조제8항에서”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적합업종의 사업조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3.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이사회 의결서
 4. 적합업종 합의내용 이행 여부 등 사실조사 확인서
- ② 위원회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을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사업조정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게 사업조정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업종의 적합업종 합의내용 이행 여부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 제5호)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권고·공표 및 철회”를 “권고·공표·이행명령 및 철회”로, 제8호(종전 제7호) 중 “법 제43조제1항제3호”를 “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으로 하고, 후단의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1호(종전 제8호)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9. 제2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

10. 제2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운영

제28조 중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시행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조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3조 제2항	5,000만원 이하

부칙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상생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p> <p>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p>1. ~ 2. (생략)</p> <p>3.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p> <p>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나.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다. 기업이나 기업 관련 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p>	<p>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p> <p>① ----- ----- ----- <u>15명</u>----- -----.</p> <p>② ----- ----- ----- <u>당연직 위원은</u>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삭 제></p>

<p><신 설></p>	<p><u>③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사람이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2.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3. 기업이나 기업 관련 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u>
<p><신 설></p>	<p><u>④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및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심의안건을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분야별 조정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심의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u></p>
<p><신 설></p>	<p><u>⑤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위원장</u> <u>2.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u> <u>3. 위촉직 위원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등에 따라 위원</u>

	<p><u>규정된 기준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u></p> <p><u>③ 위원장과 제2항제1호·제2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u></p> <p><u>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u></p> <p><u>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u></p> <p><u>⑤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u></p>
<u>제22조(조정심의회의 운영) ①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고,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	<u>제22조(조정심의회의 운영) ① 조정심의회(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u>
<u>② ~ ⑥ (생략)</u>	<u>② ~ ⑥ (현행과 같음)</u>
<u>⑦ 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u>	<u>⑦ 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 신상정보 및 기업 영</u>

	<p><u>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또는 조정심의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u> <u>2. 특정 위원의 발언내역</u> <u>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u>
⑧ ~ ⑨ (생략) 〈신설〉	⑧ ~ ⑨ (현행과 같음)
	<p><u>제2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u> <u>(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u> <u>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u> <u>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의결에서</u> <u>제척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u> <u>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u> <u>견을 진술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 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가 사업조정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인 법인의 임원인 때</u> <u>2. 심의회 조정사항에 대하여 사업조 정의 당사자의 대리인(법정대리인 포함), 보증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 인일 때</u> <p><u>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u></p>

	<p>있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p>
제23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생략)	<p>제23조(사업조정의 신청 등)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신설)
<신설>	<p>②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사업조정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게 사업조정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② ~ ④ (생략)	<p>③ ~ ⑤항으로 한다</p>
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 ----- .	<p>⑥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 등은 제1항 각호 및 제23조의2제1항 각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⑦ 법 제32조제6항에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p>⑧ 법 제32조제8항에서----- ----- -----</p>

<p>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생략) 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p> <p><신설></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제8조제3항에</u>-----</p> <p>-----</p> <p>제23조의2(적합업종의 사업조정 신청 등)</p> <p>①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3.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이사회 의결서 4. 적합업종 합의내용 이행 여부 등 사실조사 확인서 <p>② 위원회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을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사업조정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게 사업조정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업종의 적합업종 합의내용 이행 여부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p>
<p>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소기업청장</p>	<p>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p>

<p>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u>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p>	<p><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u></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신설></p>	<p>4. 법 제3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p>
<p>4.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고·공표 및 명령</p>	<p>5호로 한다</p>
<p>5.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공표 및 철회</p>	<p>6. ----- <u>제4항</u> ----- 권고·공표·이행명령 -----</p>
<p>6.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p>	<p>7호로 한다</p>
<p>7.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권한(제6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p>	<p>8. 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 (제7호에-----)</p>
<p><신설></p>	<p>9. 제2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p>
<p><신설></p>	<p>10. 제2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운영</p>
<p>8.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서류의 공개</p>	<p>11. 제23조제6항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p>
<p><신설></p>	<p>제29조(시행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조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p>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생략)
- 나.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투자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500만원
다.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3호	300만원
<신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 가. (현행과 같음)
- 나.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3조제2항	5,000만원